

이용자 이용료 및 비용부담

2025년

정안재가노인복지센터

1. 이용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2025년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	이용자 본인부담율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	일반 대상자: 15% 의료 대상자: 6% 경감 대상자: 6%또는 9% 기초생활수급자: 0%

1) 방문요양 -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류번호	방문당 시간	이용자 수가	이용자 부담금(15%기준)
가-1	30분 이상	16,940	2,541
가-2	60분 이상	24,580	3,687
가-3	90분 이상	33,120	4,968
가-4	120분 이상	42,160	6,324
가-5	150분 이상	49,160	7,374
가-6	180분 이상	55,350	8,303
가-7	210분 이상	61,670	9,251
가-8	240분 이상	68,030	10,205

2) 방문목욕 -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분류번호	분류	이용자 수가	이용자 부담금(15%기준)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6,480	12,972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7,970	11,696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	7,304

2. 비용 부담

- 1) 기관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.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,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%는 본인이 부담하고 다만,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.
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,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

본인부담금의 60%를 경감하고, 건강보험가입자(직장,지역)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% 또는 40%를 경감하여 부담한다. (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30% 가산하여 산정한다)

- ④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 되는 교통비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. 비용부담 추가표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“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
- 2)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.

4. 기타 비용부담

- 1) 이용자의 거주지에서,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, 수도, 가스, 전기,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2) 외출 시 동행,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